

2021-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위한 신청기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습대상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재학생 및 수료생(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원자격 무시시험검정 합격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 교원양성과정 이수 기간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반드시 **총 2회 이상** 실시해야 함
-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기별 1회 (ex. 5월에 교내 대면 실습을 이수하고, 6월에 타기관에서 실습을 이수하였어도 인정은 1회만 가능함.)
- 수료생의 경우 수료 시점에 따라 의무 이수 횟수 적용

수료 일자	2016. 2. 이전	2016. 8.	2017. 2. 이후	비고
의무 횟수	0회	1회	2회	규정시행일 '16.03.01.

2. 2021학년도 1학기 실습 방법 및 실습 신청 안내

가. 실습대상별 실습방법

실습대상	실습방법	신청방법	신청기한
2021.8월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생	좌측 방법 중 택1	비대면 실습	2021.4.26.(월)~27.(화) 10:00 ~ 17:00
		대면실습	
재학생	대면 실습	uDRIMS 신청	2021.4.28.(수) ~4.29(목) 10:00 ~ 17:00

나. 세부 신청방법

- (대면,비대면)uDRIMS 신청 경로 : uDRIMS 접속→[교직]→[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신청]
- (비대면) 실습기관 신청 : 하단 QR코드 접속 → 네이버 폼 작성 →희망일정으로 접수 및 제출 → 추천인란에 "동국대 사범대학" 반드시 기재 → 기관에서 실습대상자로 확정통보 받은 후 실습 참가



다. 실습 일정 및 정원 (전 회차 동시 및 선착순 접수)

실습방법	회차 구분	실습 일시	교육 정원(명)	강사 인원(명)	비고
비대면 실습	-	2021.4. ~ 마감시까지	선착순접수	-	ZOOM 활용 원격 교육
대면실습	1회차	2021.05.04.(화) 18:00~21:00	40(학부30, 교대원10)	2	-실습장소: 체육관 -20명씩 2개조 동시 진행 - 방역규칙 준수 - 고온 발열자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불가
	2회차	2021.05.08.(토) 10:00~13:00	40(학부25, 교대원15)	2	
	3회차	2021.05.13.(목) 18:30~21:30	40(학부40)	2	
	4회차	2021.05.14.(금) 17:00~20:00	40(학부30, 교대원10)	2	
	5회차	2021.05.15.(토) 10:00~13:00	40(학부25, 교대원15)	2	
	6회차	2021.05.18.(화) 18:00~21:00	40(학부30, 교대원10)	2	
	7회차	2021.05.20.(목) 18:30~21:30	40(학부40)	2	

8회차	2021.05.21.(금) 18:00~21:00	40(학부30, 교대원10)	2
9회차	2021.05.25.(화) 18:00~21:00	40(학부30, 교대원10)	2
10회차	2021.05.27.(목) 18:30~21:30	40(학부30, 교대원10)	2

라. 기타 안내사항

- 1) 대면 실습은 실습위주의 교육이므로 당일 간편복 차림으로 참여
- 2) 교육 시작 후 지각 시 실습 불가
-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회 이상 이수해야 다음 학기 **학교현장실습 이수** 가능

아. 대면실습 안내사항

- 1) **[붙임4]의 참여 신청서** 필수 지참하여 교육 시작시 제출
 ※ 표에 표시된 필수정보(성명, 성별, 출생연도, 휴대전화번호 등) 반드시 기재
- 2) 날짜, 실습시간, 강의실 착오 없도록 확인 철저

3. 타 기관 이수 인정 안내

가. 인정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한 실습에 한하여 인정 가능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기준>

내용		시간	강사
가. 이론교육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주의사항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2H	가)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 나)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실습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H	다) 「응급의료 관련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내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음 단,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실습생 30명당 강사1명(보조강사 포함) 기준 준수			

나. 인정방법: ①이수증(자격증)사본과 ②타기관 이수확인서[붙임] 제출 시 해당 학기 실습결과로 인정

ex) 2021.04.17. 이수한 이수증 및 이수확인서 제출 시 20121-1학기 실습결과 Pass

※ 1학기: 매년 3.1 ~ 8.31 / 2학기: 매년 9.1~ 다음연도 2.28

다. 2021학년도 1학기 타 기관 이수 인정 증빙자료 제출 기한: 2021.06.07.(월) ~ 06.11.(금)

※ 해당 기간 이후에 실시되는 타 기관 교육의 경우 다음 학기 제출기간에 제출 가능

라. 유의사항

- 타 기관 이수 인정여부는 1회에 한하여만 인정, 유효기간(2년) 이후 제출시 인정 불가 (동일 학기에 본교 /타 기관 중복이수 불가)
- 교육대학원·사범대학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든 실습 타 기관으로 간주(ex. 동국대학교 시설안전팀, 건강증진센터 등의 교내 기관에서 이수한 실습도 타 기관 실습으로 처리함)
- 교직과정 이수자의 경우, 대상자로 선발된 이후의 실습 내용만을 인정함(ex. 2019년 타기관 실습 이수, 2020년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 2019년에 이수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 교육대학원생의 경우, 입학 후 실시한 실습만 인정함(ex. 2020년 2학기 교육대학원 입학. 2020년 8월에 시행한 실습의 결과는 인정하지 않음.)

4. 기타 문의 - 사범대학 학사운영실 ☎ 02-2260-3884